

第111回(臨時會)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

第1號(附錄)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

目 次

1. 서울特別市鐘路區兒童委員協議會條例改正條例(案) 1面

1. 서울특별시종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개정조례(안)

의 안	813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1. 5.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아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」가 폐지(2000. 10. 25)되어 우리 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를 개정하여 아동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신설조항
 - 위원의 임무(안 제2조)
 - 위원의 정수(안 제3조)
 - 위원의 위촉(안 제4조)
 - 위원의 임기(안 제5조)
- 아동위원협의회 임원 임기 단축(안 제6조)

3. 개정근거

- 아동복지법 제6조(아동위원)

4. 예산수반사항 : 필요

- 2001년도 예산편성(아동위원협의회 회의 수당)

5. 개정(안) 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종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종로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아동위원(이하 '위원'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의 임무)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
2.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
3.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
4.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

제3조(위원의 정수) 위원은 동 단위 2명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의 위촉)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
2.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협의회 구성) ①협의회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, 각각 호선한다.

②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.

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협의회 기능)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
2.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
3.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
4. 기타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

②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.

제8조(협의회의 회의등)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는 상·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회의수당 등)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아동위원으로 본다.

